

의과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

2014. 3. 1 제정

2015. 9. 1 일부개정

<교무처 학사팀>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사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요건) 의과대학 졸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학기: 의예과 4학기 이상, 의학과 8학기 이상
2. 취득학점: 의예과 75학점 이상, 의학과 172학점 이상

제3조(유급) ① 유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유급: 해당 학기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학기를 다시 이수해야 하는 제도
2. 학년유급: 해당 학년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제도

② 학기유급은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1. 수강 교과목 중 어느 하나에 F 등급이 있는 경우
2. 학기의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경우

③ 학년유급은 의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1. 수강 교과목 중 어느 하나에 F 등급이 있는 경우
2. 학년의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경우
3. 휴학 또는 제적처리될 경우.

제4조(휴학기간의 한도) 휴학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예과: 통산 3학기
2. 의학과: 통산 6학기

제5조(학년) ① 의예과 학생의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취득학점이 35학점 이내인 학생
2. 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36학점 이상인 학생

② 의학과 학생의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취득학점이 42학점 이내인 학생
2. 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43학점 이상 85학점 이내인 학생
3. 3학년: 5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86학점 이상 128학점 이내인 학생
4. 4학년: 7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129학점 이상인 학생

③ 학기 수는 등록횟수에 의하며, 의학과 학생은 의학과에서의 등록횟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의학과 학생에 대한 불응시 인정점수 불허) 의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학칙」 제45조 제2항, 「학사운영 규정」 제65조와 제66조에 의한 불응시 인정점수 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그 대신 추가시험을 과하여 성적을 평가한다.

제7조(제적) ① 「고려대학교 학칙」 제20조가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과대학 학생은 제적한다.

1. 의학과 1,2학년의 경우 동일 학기에서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

2. 의학과 3,4학년의 경우 동일 학년에서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
 3. 재학기간 중 4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
- ② 휴학으로 인한 유급은 제1호와 제2호의 횟수적용에서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의 시행에 따라 「학칙시행세칙(II)」는 폐지한다.
② 제적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횟수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